

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34045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5. 12. 18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김진득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3. 5. 12. 압류		배당요구종기	2025. 9. 29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입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입	전입신고일자· 외국인등록(체 류지변경신고) 일자·사업자등 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김현서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 자	2022.01.21	235,000,000		2022.01.21	2021.12.20		
주택도 시보증 공사 (임차인 김현서)	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2.01.21.~ 2024.07.23	235,000,000		2022.01.21	2021.12.20	2025.9.25.	
<비고>										
김현서: 주택임차권등기권리자로서 주택임차권등기일은 2024. 1. 31.임										
주택도시보증공사: 경매신청채권자이고 임차인 김현서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으로서,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등기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제출함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을구 순위 13번 주택임차권등기(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약서가 제출됨)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
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34045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64-7

파라다이스

가동

[도로명주소]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412번길 32

철근콘크리트구조 (철근)콘크리트평스라브지붕 5층 공동주택

1층 12.91㎡

2층 106.74㎡

3층 106.74㎡

4층 106.74㎡

5층 100.91㎡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4층402호

철근콘크리트구조 44.52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64-7

대 432.2㎡
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
대지권의비율 : 1. 432.2분의 26.568

감정평가액

230,000,000

회차

기 일

최저매각가격

매수신청보증금

1회	2026.02.04	230,000,000	23,000,000
2회	2026.03.18	161,000,000	16,100,000
3회	2026.04.29	112,700,000	11,270,000
4회	2026.06.10	78,890,000	7,889,000